

공 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9. 18.

문 화 재 청 장

1. 공고 내용

○ 문화재명

구분	지정 명칭	비고
공동체종목	설과 대보름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함
	한식	
	단오	
	추석	
	동지	

2. 지정 사유

- 설과 대보름·한식·단오·추석·동지 관련 문화는 우리 민족의 가족공동체 정체성 형성과 관련하여 필수 불가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문화 등 한국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명절은 역사 문헌에서 그 기록이 풍부하고 현재까지 단절 없이 그 전통을 지속·유지하고 있음. 우리 명절은 삼국시대부터 국가 차원의 제사를 지낼 정도로 명절문화가 성립된 시기였고, 명절이 제도화되고 확립이 되었던 고려시대에는 9대 속절(원정(元正, 설날), 상원(上元, 정월대보름), 상사(上巳, 삼짇날), 한식(寒食), 단오(端午), 추석(秋夕), 중구(重九), 팔관(八關), 동지(冬至))로 언급되고 있음. 조선시대에는 각종 세시기(歲時記) 류에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명절은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음.

- 1876년 개항과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서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명절의 모습도 그 변화를 겪으면서도 그 전승을 유지해 옴. 특히 1896년 태양력이 수용되고 우리 설이 음력설[舊正]로 불리고, 1월 1일은 양력설 신정(新正)으로 불리게 되었음. 1989년 설날의 이름을 되찾을 때까지 이중과세(二重過歲)에 대한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명절은 음력 절기의 오랜 전통과 전통적 시간 인식이 드러나는 뚜렷한 위상을 가지고 있음.
- 설과 대보름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 해당하며,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인류 보편적 ‘신년맞이 명절’임.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세시내용이 시간적·내용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설은 가족공동체를 중심으로 세시문화가 강조되는 반면, 대보름은 마을단위의 공동체 의례 및 놀이가 중심을 이루는 대표적 명절임.
- 한식을 봄을 대표하는 명절로,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며 성묘, 벌초, 한식 제사 등 조상 추모 의례가 강조되어 전승되고 있음. 특히 재외동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한식이 큰 명절로 인식되어 조상 숭배 의례를 지속·유지하고 있음.
-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여름을 대표하는 명절로 양기(陽氣)가 가장성한 날로 쑥과 창포 등으로 대표되는 약초 문화 및 단오제로 대표되는 공동체문화는 동아시아 내에서도 독자성을 견지하고 있는 명절임.
- 추석을 반복되는 자연의 법칙성과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달의 상징을 취하는 보름 명절로서, 조상숭배와 관련 세시놀이·음식문화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농공감사일(農功感謝日)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이듬해 풍농을 기리는 뜻깊은 명절임.
- 동지는 24절기의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겨울의 대표 명절임. 한 해 마지막 달인 선달은 묵은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로 동지 팔죽의 벽사(辟邪) 의례가 전승을 지속·유지하고 있는 명절임.
- 우리 명절의 대표의례인 ‘차례’와 ‘성묘’는 혈연 간 화목을 다지는 시간이자 제의를 통해 조상의 은덕과 은혜에 보답하는 계기가 됨. 산업사회가 가족의 분산을 초래하였으나, ‘귀성(歸省)’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친지 등 가족공동체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노력하는 등 명절은 분산된 혈연이 집합하는 계기가 되고, 혈연간 협동과 화목을 다지는 핵의 구실을 담당하고 있음. 이처럼 우리의 명절은 오랜 기간 한민족이 정체성을 확인·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우리의 명절은 의식주·세시풍속·의례·구전 전통·놀이와 연희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화 현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로 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주제성이 무궁무진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이처럼 가족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전통 생활관습이자 전통지식으로서의 설과 대보름·한식·단오·추석·동지를 지정함.
- 설과 대보름·한식·단오·추석·동지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가치가 높아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전 전승하고자 함.
- 다만, 설과 대보름·한식·단오·추석·동지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생활관습이 아니므로 특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전화번호 : 042-481-4994
- 전송번호 : 042-481-4979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E-mail : jhlee8209@korea.kr